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17

발의연월일: 2025. 2. 5.

발 의 자:서영교·송재봉·임오경

유동수 · 윤준병 · 박상혁

이개호 · 장경태 · 전현희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 대응과 처벌이 어려움. 특히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의 경우, 기존 협박죄 적용에 있어 피해자의 범위, 범죄성립 여부 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음.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유포하여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함으로써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유포하여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
	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유포하여 공중을 협박한 사람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
	<u>다.</u>